

대법원 2018. 12. 27 선고 2018다27289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청구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12. 27 선고 2018다272896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9. 7 선고 2017나66587 판결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오라이트알이에프

피고, 상고인 A

판결 선고 2018. 12. 27.

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9. 7. 선고 2017나66587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피고가

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조재연

주심대법관박상옥

대법관노정희